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0798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5지분에 관하여 2017. 11.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7,245,6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2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7. 3. 30. 대출원금 8,800만 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는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7. 15.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D회사로부터 2020. 11. 23.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21. 1. 29. C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이 사건 대출 채권액은 2021. 2. 25. 기준으로 합계 119,216,697원(= 자산확정일인 2020. 10. 30. 기준 미변제 원금 81,721,96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34,324,431원 +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2021. 2. 25.까지 지연손해금 3,170,306원)이다.

다. F은 상속인으로 배우자 C, 직계비속 피고를 두고 2017. 11. 9.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C과 피고는 2017. 11. 9.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2.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G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24,300,000원인 2016. 10. 26.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H,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2017. 3. 30.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7. 12. 11., G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2. 27. 각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I에게 매매(거래가액 1억 6,700만 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매매(거래가액 1억 6,700만 원)를 원인으로 2019. 10. 22.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3/5)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173,924,000원(= G은행 108,924,000원 + H 65,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가를 초과하는지

(가)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 K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G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억 7,100만 원이고, G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이 108,9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4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L조합의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처음에는 H의 C 및 망인에 대한 대여금 7,000만 원(= 2012. 12. 20. 1,000만 원 + 2013. 8. 30. 1,000만 원 + 2016. 4. 19. 5,000만 원)²⁾ 이라고 주장하다가 L조합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에서 C이 H에게 송금한 금원내역이 확인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에 H로부터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2016. 8. 3. 변제받아 설정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5,000만 원이었다가 설정 후 2017. 5. 25. 1,5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여 합계액이 6,500만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 ② 위 L조합의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2012. 12. 10.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까지 사이에 H로부터 C에게 송금된 금원 합계가 7,000만 원(= 2012. 12. 20. 1,000만 원 + 2013. 8. 30. 1,000만 원 + 2016. 4. 19. 5,000만 원)인데 반하여 C으로부터 H에게 송금된 금원 합계는 8,300만 원(= 2013. 9. 17. 300만 원 + 2015. 3. 3. 5,000만 원 + 2016. 8. 3. 3,000만 원)으로서 오히려 C이 H에게 1,300만 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H이 위 2015. 3. 3.자 5,0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2015. 3. 3.자 5,000만 원은 H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이 소외 회사에게 돈을 이체할 사정이 있어 단지 H의 계좌를 거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C은 2015. 3. 3. H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같은 날 직접 소외 회사에게 7,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에 관한 아무런 서면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7,100만 원에서 G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08,924,000원을 공제한 잔액 62,076,000원(= 1억 7,100만 원 - 108,924,00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발생해 있었던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가)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은행의 근저당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후에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결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미달하는 채무자의 상속분이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도 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이 119,216,697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62,076,000원인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 3/5에 따른 공동담보가액은 37,245,600원($= 62,076,000원 \times 3/5$)이므로, 원고는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37,245,6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5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37,245,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2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지

1)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은 사망일 후로 추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망일과 같은 날로 본다.

2) 피고의 2021. 11. 8.자 증거설명서 참조